제 63 호

# 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5년 01월 09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세대주 성명 | 성 명<br>생 년 월 일 | 주 소 | 지연 신고사항 |
|---|---|---|---|
| 박** | 박**<br>1977-02-22 |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| 무단전출 |
| 박** | 이**<br>1980-05-01 |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| 무단전출 |
| 박** | 박**<br>2013-11-04 |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| 무단전출 |
| 박** | 이**<br>2003-10-07 |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| 무단전출 |
| 박** | 이**<br>2005-01-29 |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| 무단전출 |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 담당자 : 강 다은 문의전화 : 032-560-4618 )

2014년 12월 31일

청라1동장 인